2020년도 제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0. 4. 27.(월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최현용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60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분과위원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50건(안건번호 제2020-14309호~1587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4309호~14321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출판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4322호~14326호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특정 블로거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4327호~14329호, 14333호, 14334호는 '○○○○○' ●●●●●로 활동했던 민원인이 자신이 제작, 출연했던 영상물의 일부를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요구한 사안 임. 해당 안건들은 1인 미디어 플랫폼에 관한 심의 기준 정립 등 심 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상정함.

안건번호 제2020-14330호, 14331호는 민원인이 다른 '○○○○○' ● ●●●●● 함께 출연한 '합동방송' 영상물로 다른 ●●●●● 채널에서 전송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볼근거가 없고, 민원인이 저작재산권자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4332호, 14335호는 민원인이 '○○○○'에서 방

송한 영상물의 스틸컷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스크린샷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불명확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4336호~14349호는 웹하드에서 상업용 컴퓨터프로 그램의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라이선스 키, 크랙파일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 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19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 한 54건(안건번호 제2020-1647호~1700호)
 - 회의결과: 54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54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0개 안건(10개 안건은 부결사유가 중복됨)} 모두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66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6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2쪽의 OSP명, 카페명, 6쪽의 사이트명, OSP명, 카페명, 게시판명, 8쪽~9쪽의 사이트명, 9쪽의 서비스명, OSP명, 10쪽의 OSP명, 12쪽~14쪽의 사이트명, 14쪽의 카페명, 게시물 제목, OSP명, 15쪽의 아이디, 15쪽~16쪽의 사이트명, 서비스명, OSP명, 17쪽의 OSP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 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1쪽~27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B 위원: 같은 생각임. 제2호 안건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OSP명, 카페명, 사이트명, 게시판명, 서비스명, 게시물 제목, 아이디는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 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1쪽~28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0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14309호~15878 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250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309 호~14321호는 실명의 민원인들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에서 출판, 만화 복제물을 판매한 총 13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만화 복제물의

경우 만화를 캡처한 jpg.파일 형태로 판매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4309호~1432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4309호~14321호는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
- B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4309호~1432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322호~14326호는 2020. 4. 16.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총 13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20-14322호 URL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심 의대상 게시물에서 방송 '◎◎◎◎◎◎◎◎◎◎◎◎◎◎ 제공하고 있음.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322호~14326호의 게시자는 모두 동일인임.

(해당 블로그의 다른 카테고리를 보여주면서)해당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 '◇◇〉', '◆◆◆◆◆ ' 등도 제공하고 있음.

(다른 카테고리에서 '◆◆◆◆◆ '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해당 게시물 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게시가 중단된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4322호~1432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특정 게시자가 여러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 B 위원: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4322호~1432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327호~14335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인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의 ●●●●●로 활동한 바 있으며, 본인이 제작 또는 출연한 영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음.

(민원인 ●●●●● 명을 검색한 결과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은 헬스, 요가 동작을 이용한 운동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 □□, ■■■■, △△△△, ▲▲▲▲을 하여 인기를 얻었음.

(안건번호 제2020-14327호 URL에 접속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

주면서)안건번호 제2020-14327호는 '▽▽▽' 사이트 이용자가 '▼▼▼ ▼▼▼ ●●●●●'라는 제목으로 △△△△△△△△△△ · '움짤' 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움짤'은 자투리 이미지들을 이어붙여 움 직이는 형태로 만든 파일을 말함.

(안건번호 제2020-14332호 URL에 접속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

임.

주면서)안건번호 제2020-14332호의 임베디드 링크된 유튜브 영상은 현재 재생할 수 없음. 민원인의 요청으로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의 전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제2020-14333호 URL에 접속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 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스틸컷을 제공하고 있음.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 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 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 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안건번호 제2020-14332호, 제2020-14335호를 제외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물의 일부를 살펴보면 제작과정에 참여한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요소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물의일부가 거래되는 합법 시장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1인 미디어 창작물의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에 다른 요소들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5조 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할 것임.

안건번호 제2020-14327호~14329호, 14333호, 14334호의 경우 민원인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심의대상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물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 출연한 민원인이 심의대상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은 한때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이용에 제공되었던 저작물로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포가저작권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스크린샷을 제공하는 안건번호 제2020-14332호는 임베디드 링크로 제공되는 유튜브 영상이 현재 삭제된 점, 안건번호 제2020-14335호의 스크린샷은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안건번호 제2020-14330호, 14331호는 민원인이 ●●●● 두 명과 함께 합동방송을 한 건으로 민원인이 저작재산권자 내지 영상물제작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A 위원: 해당 영상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 C 위원: 해당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약관 제24조에 따르면 "회원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의 저작자가 보유하되, 본 약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콘텐츠에 대한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회원이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회사나 타 회원 기타 이용자가 녹화/편집/변경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한 다음 이를 서비스의 타 회원 기타 이용자들이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회사의 제휴사에 제공하여 그 이용자들이 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회원이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회사가 저장한 후이를 VOD 등의 다시 보기 서비스로 서비스 회원 기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회사의 제휴사에 제공함으로써 제휴사가 그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또는 VOD 등의 다시보기 서비스로 참여할수 있게끔 함."이라는 내용이 있음.

또한 "콘텐츠 이용 범위 - 국내 및 국외에서의 복제, 수정, 각색, 공연, 전시, 방송, 배포, 대여,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기타 이용", "콘텐츠 이용 조건 - 비독점적, 지속적인 무상의 권리로서 양도가능하며, 취소 불가하고 서브 라이센스가 가능함."이라는 내용이 있음. 해당 내용은 회사, 타 회원 기타 이용자 및 회사의 제휴사가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임.

- B 위원: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함.
- C 위원: 일반적인 이용약관보다 과하다고 생각함. 회사가 비독점적 권리를 가지지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 직접 민원을 제기했고, 자신이 만든 방송을 본인의 의지로 내리고자 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부결할 수 있는지 의문임. 또한 저작권법적인 문제는 아니나 민원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음.
- C 위원: 해당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약관 상에 제3자가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제재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비독점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증거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 A 위원: 해당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은 흔히 드라마, 공연, 퍼포 먼스 등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함. 민원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해당 사안을 보호하기에는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걸려 있음.
- B 위원: 저작권보호원이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별개로 만약 ●●●●●가 영상물을 내리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상 ●●●●●가 영상물을 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함. 해당 1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 어떠한 이익이라도 얻었을 것임.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각오 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이나 ●●● 등과 같은 메이저 온라인 사업자라면 민 워인의 요청으로 영상물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음.
- B 위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논리로 해당 사안은 '(▶(▶())' 방송 처럼 적용될 수 있다고 봄.
- A 위원: 해당 ●●●●● ●는 상업적인 방송에 이미 영상물을 업로드 하였는데 영상물을 막아주기 바라는 것은 말의 이치가 맞지 않는다 고 생각함.
- C 위원: 법상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용약관에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존 재하는 상황임.

- B 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15조 1호 '복제·전송된 불법복제 물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저작권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2호 '복제·전송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의 경우에는 회사의 허용 여부를 알 수 없음. 3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동일·유사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는지 여부'의 경우에 는 애매함, 4호 '경고·삭제 등의 명령 이외 다른 대체적 수단이 있는 지 여부'의 경우에는 사적인 구제 수단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임. 5 호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호에 관한 요청을 하는 등 보호노력을 하 였는지 여부'의 경우에는 인정됨. 6호 '불법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 의 유형·정품가격·선호도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전문 위원은 해당 부분을 달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임. 7호 '사회적·국제적인 환경 등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8호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해당 1인 미디어 플랫폼에 출연한 ● ●●●●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생활 노출 등은 이미 감내하는 것 으로 봐야 하고, 공공기관이 사후적으로 해당 부분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됨. 앞으로 1인 방송 관련 사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기준 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한다면 1인 미디어 플랫폼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B 위원: 해당 사안은 ●●●●● 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 이 더해진 건임. 해당 ●●●●● 가 직접 민원 신고를 하였다는 점

을 심의위원회에서 더 고려해야 하는지도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임.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영상물은 신체 노출이 심한 방송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원저작물 내지 원콘텐츠가 다 내려진 상황이라서 영상물이 전반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장면만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임.
- C 위원: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업적 콘셉트의 방송인 것으로 보임.
- B 위원: 주된 쟁점은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가 직접 민원 신고한 점이 어느 정도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민원인이 ●●●●●로서 영리활동을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사후적으로 영상물을 내리는 것에 조력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기준을 세울 필요성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4327호~1433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0-14327호~14329호, 제2020-14333호, 제 2020-14334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공개된 저작물을 인용 또는 이용하는 사안은 이와 관련된 심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 사안들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저작권성은 인정되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고, 상업적 성격의 '1인 방송' 특성상 해당 영상을 사후적으로 시 정권고 대상으로 삼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나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안건번호 제2020-14330호, 제2020-14331호는 합동방송을 한 사안으로, 다른 ●●●●● 채널에서 영상물을 전송하고 있고, 민원인이 저작재산권자 내지 영상물제작자인지 확인되지 않아 부결함이 타당해 보임.

안건번호 제2020-14332호, 제2020-14335호의 스크린샷은 저작물성 인 정여부가 불명확해 보여 부결 의견임.

- C 위원: 동의함.
- A 위원: 마찬가지로 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4327호~14329호, 14333호, 1433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 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보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안건번호 제2020-14330호, 14331호, 14332호, 143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336호~1434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오토데스크사의 'Autodesk Revit', 'AutoCAD', 어도비사의 'Photoshop',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한글'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총 16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14336호, 14348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시리얼번호,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14337호, 14338호, 14341호, 14342호, 1434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크랙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14346호, 14347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시리얼번호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그 외나머지 안건들은 자동인증됨.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 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Reivit, CAD, 3DS MAX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오토데스크', Sketchup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트림블', Photoshop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어도비', MS OFFICE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 한컴오피스, 한글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한글과컴퓨터'는 각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오토데스크'사의 PowerMILL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 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4336호~1434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
- B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4336호~1434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350호~15878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음악 '나의 오랜 연인에게 (가수: 다비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14370호의 음원파일은 2019. 12. 3. 발매된 곡으로 앨범 '나의 오랜 연인에게'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2020년 4월 최신가요 TOP 105 + 추천곡 TOP 6 + 227 (320k)'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227곡의 음원 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29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음악 '막걸리 한잔 (가수: 영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386호의 음원파일은 2020. 1. 30. 발매된 곡으로 앨범 '내일은 미스터트롯 데스매치 PART1'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영탁 - 막걸리 한잔' mp3 파일을 2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참고로 원곡의 실연자는 '강진'임.

(음악 '아로하 (가수: 조정석)'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4414호의 음원파일은 2020. 3. 27. 발매된 곡으로 앨범 '슬기로 운 의사생활 OST Part3'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2020년 04월

18일 TOP 100(320k)'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100곡의 음원 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참고로 해당 원곡 실연자는 '쿨'임. 해당 곡은 음원 사이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음악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가수: 조이 (JOY))'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415호의 음원파일은 2020. 3. 20. 발매된 곡으로 앨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PART2'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NEW] 멜론 실시간 TOP 100 - 04월 19일 오전 11.00. 320kbps.고음질'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100곡의 음원 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참고로 원곡 실연자는 '베이시스'임.

(게임 '블랙 메사'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461호는 2020. 3. 6.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1,4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20,500원이고, 배급사는 'Crowbar Collective'임.

(게임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콘트랙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20-14494호는 2019. 11. 23.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1,1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31,000 원이고, 개발 및 유통사는 'CI 게임즈'임.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590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4.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자체 자막인 것으로 보임.

(영화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755호는 2019. 1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1. 13.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19년 한국 애니메이션 박스오피스 1위를 하였음.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013

호는 2020. 4. 29. 개봉 예정인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19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만화 '킹덤 (출판 : 대원씨아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5698호는 블로그에서 만화 '킹덤 1권'을 스캔본으로 보이는 jpg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어문저작물의 1권은 2014. 2. 28. 출간되었고, 총 56권으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2,700원임. 참고로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킹덤 2권'도 jpg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만화 '일곱 개의 대죄 (출판 : 학산문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20-15872호는 블로그에서 '일곱 개의 대죄' 4화를 jpg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어문저작물의 4화는 2016. 3. 2. 출간되었고, 총 39권으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2,500원임. 참고로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일곱 개의 대죄' 1화부터 346화 완결까지 제공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4350호~1587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4350호~1587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4330호, 제2020-14331호, 제2020-14332호, 제2020-14335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0-14327호~14329호, 제2020-14333호, 제2020-14334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밖에 안건번호 제2020-14309호~14326호, 제2020-14336호~1587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20면부터 37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647호~1700호는 54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54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0개 안건(10개 안건은 부결사유가 중복됨)} 모두 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4.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최현용